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50

발의연월일: 2020. 8. 19.

발 의 자:서영석・인재근・문진석

김경협 · 김경만 · 박홍근

이정문 · 강선우 · 권칠승

박영순 · 민홍철 · 설 훈

최혜영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하여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,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.

그러나 시정명령의 요건이 엄격하여 현실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,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의견진술기회 보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,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있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데 제한이 있음.

이에 시정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.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와 피해

자 등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함(안 제42조, 제43조, 제43조의2 신설 및 제45조).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 중 "권고를 한"을 "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"으로 한다.

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"를 "경우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 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3조의2(의견진술의 기회 부여)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시 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,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

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 제45조제1항 중 "요구할 수 있다"를 "요구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권고의 통보) 위원회는 이	제42조(권고의 통보)
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	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44조	
의 <u>권고를 한</u> 경우 그 내용을	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
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	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
다.	
제43조(시정명령) ① 법무부장관	제43조(시정명령) ①
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	
로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44	
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	
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	
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<u>경우로서 그 피</u>	<u>경우</u>
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	
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	
<u>정되는 경우</u> 피해자의 신청에	
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	
령을 할 수 있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</u>
	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하여

<신 설>

④ (생략) <신 설>

제45조(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 제45조(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출요구 등) ① 법무부장관은 출요구 등) ① ------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 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② (생략)

위원회에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 우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 여야 한다.

⑥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43조의2(의견진술의 기회 부여)

-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 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 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 회를 주어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, 진정 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
-----요구하여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